##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90 발의연월일: 2021. 4. 20.

발 의 자:이장섭·이학영·송재호

홍성국 · 신정훈 · 최혜영

김영호 • 고용진 • 임호선

강훈식 · 소병철 · 이규민

인재근 • 양정숙 • 한준호

의원(15인)

### 제안이유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은 FTA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같은 FTA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폐업과 실직 위기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이 'FTA 피해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의 충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미국과 EU의 경우,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상응하는 미국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를 운영하면서지원대상을 FTA로 인한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경기침체, 수입급증,세계화로 인한 무역변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통상위기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근로자를 보호하는 명분과 국가적 위기극복 및 산업·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실리, 그리고 미국·EU가 무역피해를 폭넓게 지원하는 해외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 다는 의견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통상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 성되고 있음.

따라서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상환경 변화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 및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제명).

나.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및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 제도의 도입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보완하여 국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신설).

#### 다. 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통상피해지원기업이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이행으로"를 "이행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확실한 피해"를 "확실한 피해(이하 "무역피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상피해대응"이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국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통상피해"라 한다)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제4항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확실한 피해(이하 "무역피해"라 한다)"를 "무역피해"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

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통상피해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하 "통상피해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필요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협의하고, 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정신청 방법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 1. 기업이 심각한 피해(6개월 이상의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 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 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 2. 제1호에 따른 통상피해의 주된 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세계적 경제ㆍ금융위기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 나. 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다.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

라. 국가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

- 마. 그 밖에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요건 중 피해 산정 기간, 매출액·생산량 감소 비율을 조정할수 있다. 이 경우 조정한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 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 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5조의2(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무역조정"은 "통상피해대응"으로, "무역피해"는 "통상피해"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은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은 "통상피해대응을 위한 계획"으로, "무역조정계획"은 "통상피해대응을 위한 계획"으로, "무역조정계획"은 "통상피해대응계획"으로 본다.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피해 를 입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근로자 대표 나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3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통상피해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 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 가.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 나.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 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통상피해지원기업 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 ② 제14조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그 소속 근로자(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후 실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 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③ 통상피해지원근로자(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 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및 통상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3 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무역피해"는 "통상피해"로, "무역조정지 원근로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은 "통상피 해지원기업"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 부장관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이나 통상피 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제6조 또는 제14

조"로, "규정"을 "규정(제14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두 "제6조제2항"을 "제6조제2항"을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3항·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무역조정지원근로자"를 각각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2항 또는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무역조정지원에"를 "무역조정지원 또는 통상피해지원에"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제15조제3항에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무역조정계획"을 "무역조정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조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이나 무역조정지원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	제1조(목적)
한 자유무역협정의 <u>이행으로</u> 인	이행 또는 통
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	<u> 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u>
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	
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	
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무역조정(貿易調整)"이란 제	2
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서비스업(이하 "무역조정	
지원대상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	
을 것이 <u>확실한 피해</u> 를 최소	<u>확실한 피해(이하</u>
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u> "무역피해"라 한다)</u>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u>.</u>

<신 설>

제4조(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저 수립) ① ~ 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 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u>자유무역</u>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었거 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무역피해"라 한다)와 무역조정 의 실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⑤ (생 략)

<신 설>

3. "통상피해대응"이란 무역조
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
이 국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
<u>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u>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통상피해"
라 한다)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무역피해</u>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 하는 기업의 통상피해대응을 효

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이 필 요한 기업(이하 "통상피해지원 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 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그 필요성 등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협의하고, 그 지원대상, 지원내 용, 지원기간, 지정신청 방법 등 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 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 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 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 1. 기업이 심각한 피해(6개월 이상의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 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

- 의 5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 2. 제1호에 따른 통상피해의 주된 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것
  - <u>가. 세계적 경제·금융위기</u> 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 나. 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

     급망 붕괴로 인한 무역

     의 현격한 감소
  - 다.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

     의 조치로 인한 교역환

     경의 현저한 악화
  - 라. 국가간 분쟁, 국경봉쇄등으로 인한 인적・물적자원의 이동 제한
  - 마. 그 밖에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통상 환

     경의 급격한 변화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은 통상피해의 정 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요건 중 피해 산정 기간, 매출액·생산량 감 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한 내용을 관보에 공 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 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확 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 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 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 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 원에 관하여는 제5조의2(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 한다. 이 경우 "무역조정"은 "통 상피해대응"으로, "무역피해"는 "통상피해"로, "무역조정지원기

업"은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은 "통 상피해대응을 위한 계획"으로, "무역조정계획"은 "통상피해대 응계획"으로 본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 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통 상피해를 입은 무역조정지원대 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

<신 설>

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제3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통상피해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 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
   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인 경우
  - <u>가.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납</u> 품을 하는 기업
  - 나.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상피해지원기 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 ② 제14조에 따라 통상피해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그 소속

근로자(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후 실직한 자를 포함 한다)는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 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 다.

③ 통상피해지원근로자(제2항 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를 포함한다),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및 통상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무역피해" 는 "통상피해"로, "무역조정지 원근로자"는 "통상피해지원근 로자"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은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근 로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 노동부장관은 제14조 또는 제15

<신 설>

제17조(지정취소 등) ① 산업통상 제17조(지정취소 등) ① ------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 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u>제6조</u>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 ---- 규정(제14조제7항에 따라 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1. -----법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삭 제
- 4. 5. (생략)

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이 나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 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 정 및 그 취소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

-----제6조 또는 제14조--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

- 2. 제6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 | 2. 제6조제2항 또는 제14조제3항 • 제4항-----
  - 4. 5. (현행과 같음)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 ② ----- 무역조정지원근로자

지원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u>무역조정지원근로자</u>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u>제11조제2항</u>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9조(보고) ① 삭 제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무역</u> <u>조정지원에</u>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u>무역조정지원기업</u>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그 사업에 관한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u>제13조제</u> 2항에 따라 지원을 받아 <u>무역조</u> 정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 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 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20조(출입·검사 등) ① 산업통 저 상자원부장관은 <u>무역조정계획</u> 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
1
무역조정지원근로자 또
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
2. <u>제11조제2항 또는 제15조제1</u>
항
<u> </u>
② <u>무역조</u>
정지원 또는 통상피해지원에
<u>무역조정지</u>
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③ <u>제13조제2</u>
항(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무역
조정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
지원근로자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출입・검사 등) ①
무역조정계획 또
<u> </u>
<u> </u>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u>무역조정지원기업</u>의 사무소, 영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무역조정에 관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지원과 관련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③ • ④ (생 략)

제21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나무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
상피해지원기업
②
제13조제2항(제15조제3항에 따
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21조(청문)
무역조정지원기업, 통상
피해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근
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
,